

「2022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 공고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2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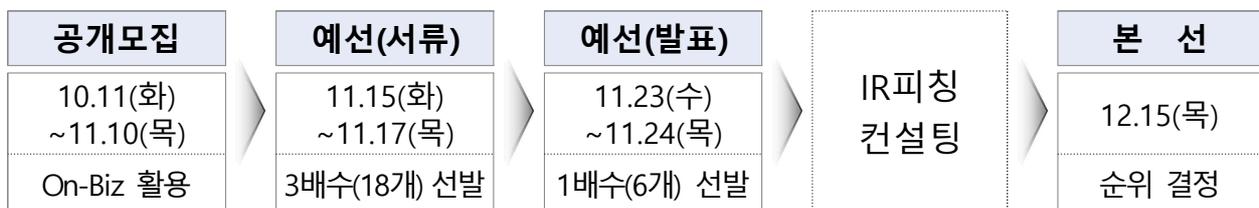
2022년 10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 | 대회 개요

(개최목적)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정책에 적극 부응

(공모부문) '12대 미래전략산업'의 핵심기술 활용 부문

진행일정



지원내용

- (시 상) 입상팀(6개) 전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상」 수여
- (포 상) 상금 총 17백만원 지급
- (기 타) 보증·투자·보험 지원 검토, Start-up NEST 서류심사 면제

II 참가개요

□ (공모부문) '12대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활용 아이템

D.N.A +	① 데이터, ② 네트워크, ③ 인공지능, ④ 수소경제
BIG3	⑤ 미래차, ⑥ 바이오헬스, ⑦ 시스템반도체
5대 유망신산업	⑧ 클라우드, ⑨ 블록체인, ⑩ 지능형로봇, ⑪ 디지털헬스케어, ⑫ 메타버스

※ [별표 1]을 참고하며, 품목별 상세설명은 「2022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참고

□ (참가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사업개시일 '19.10.12 이후)의 사업자

○ 고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로, 팀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팀장 포함)로 구성

○ 창업*의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별표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설립일로 판단. 사업자 다수인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일로 산정

○ 참가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인 경우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금지, 보증제한 대상기업이거나, 영위(예정)업종이 보증제한, 유의업종인 경우 * [별표 3], [별표 4] 참고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 他창업경진대회란 '경진대회'의 명칭을 가진 모든 대회를 의미
 - 개인기업(동업자 포함) 및 법인기업(공동·각자대표 포함)은 대표자의 수상금을, 예비창업자는 팀장과 팀원 모두의 수상금 합계를 의미
-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가접수

□ (접수방법) 신보 On-Biz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10월 11일(화) ~ 11월 10일(목) 17:00

- 마감일 17:00:00 이후에는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일괄 전산오류가 인정되는 등 특수한 경우 예외)
-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사전 접수를 권장합니다.(접수 후 마감 전까지 내용수정 가능)
- 접수 전 신보 On-Biz에서 회원가입 필수
(기 창업자는 사업자 자격으로 가입하며, 예비창업자는 팀장 개인자격으로 가입)

□ (제출서류) 참가신청 및 평가를 위한 서류

구 분	예비창업자	개인기업	법인기업	양 식
참가신청서	필 수	필 수	필 수	[지정 양식], PDF
사업계획서	필 수	필 수	필 수	[지정 양식], PDF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 수	필 수	PDF, JPG, JPEG, PNG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필 수	
IR피칭덱	예선(발표) 참가팀에 한해 별도 안내 후 제출			
창업기업확인서	본선 참가팀에 한해 별도 안내 후 제출			

※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 On-Biz에서 온라인 동의(공동인증서 필수, 전자서명방식)
-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표시대표자 외의 대표자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IV 심사평가

□ 3회의 심사평가 실시하여 유망 창업아이템을 다각도에서 평가·발굴

구 분	예선(서류)	예선(발표)	본 선
진행방식	서류평가	발표평가(ZOOM)	발표평가(대면)
평가일자	11.15(화) ~ 11.17(목)	11.23(수) ~ 11.24(목)	12.15(목)
결과발표	11.21(월) 오후 예정	11.25(금) 오후 예정	당 일
선발개수	18개(3배수)	6개(1배수)	순위 결정

- ※ 발표평가의 일정은 이메일을 통해 개별 공지하며, 대표자(팀장)가 직접 발표
- ※ 예선(발표) 및 본선 진출기업에게 참가자격 불충족 등 사유 발생시 차순위 팀이 진출

□ 평가항목

예선(서류)	문제해결(30점), 창의성(30점), 보유역량(20점), 문제인식(20점),
예선(발표)	기술성(30점), 창의성(30점), 사업성(20점), 보유역량(20점)
본 선	기술성(30점), 사업성(30점), 보유역량(20점), 창의성(10점), 전달력(10점)

- ※ 동점자 발생시 기술한 순서대로 역량별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 결정

□ 본선 운영

- (개최개요) 12월 15일(목), COEX 그랜드볼룸
- (참여인원) 참가팀, 평가위원, 투자관계자 등 150명 내외
 - 창업기획자, 창업지원기관 등 초기스타트업 보육기관 위주로 초청
- (진행사항) 6개 팀의 피칭, 심사평가, 시상, 명사특강 등

□ IR피칭 사전 컨설팅 운영

- (운영대상) 본선 참가 6개 팀
- (운영방법) IR피칭 전문가를 섭외한 뒤 약 2주간 각 팀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V 지원내용

□ 시상 및 포상

- 본선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신용보증기금 이사장상) 및 상금 수여

상 훈	대 상	최우수상	우수상	합 계
개 수	1 개	2 개	3 개	6 개
상 금	5 백만원	각 3 백만원	각 2 백만원	17 백만원

※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제세공과금 제외 후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수상자 후속지원

- (금융지원) 신용보증·투자·신용보험 등 금융지원 검토
- (비금융지원) Start-up NEST 서류심사 면제, 투자 네트워킹 등

V 기타사항

□ 접수 관련 유의사항

- 참가자는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발표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참가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경진대회의 수상 아이템에 단순한 기능 및 서비스를 추가 및 개선하는 등 단순 업그레이드한 것은 참가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관련 유의사항

- 마감 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심사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격, 허위사실 기재 등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입상 취소(상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 보호받을 수 없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 취득해야 합니다.
- 팀 참가시 상장은 1개 수여하며, 구성(팀)원 이름이 기재됩니다.
- 수상자 지원내용 및 일정은 신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문의

- 장서일 과장 (seoil@kodit.co.kr / ☎ 053-430-4371)
- 김경희 차장 (kkyunghhee@kodit.co.kr / ☎ 053-430-4370)

■ On-Biz 전산 문의

- ☎ 053-430-0888

별표 1

12대 미래전략산업 분야 범위

테 마	분 야	주 요 품 목				
D.N.A + (수소경제)	데이터	예측분석 디지털프로그램	E20011	XaaS	F29002	
		사이버보안	F29003	빅데이터	F30001	
		데이터시각화	F30002	스몰데이터	F30008	
		예측 및 처방적 분석	F30010	시맨틱기술	F31005	
		금융데이터분석	I46002			
	네트워크	드론(무인기)	A03001	4G/5G 통신	F26001	
		차량간통신(V2X)	F26003	사물인터넷 (IoT, M2M포함)	F26005	
		밀리미터파(초고주파)	F26006	방송통신인프라	F26008	
		스마트시티	F26012	6G통신	F26013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 (Massive MIMO)	F26015	에지컴퓨팅	F27004	
		초소형 위성용 통신 기술	F27016	스마트홈	F28005	
		소프트웨어정의	F29006	재난안전관리시스템	F30005	
		지능형교통체계	F30006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F30009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01004	지능형기계	A01009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A01013	스마트 드론 파밍	D14007	
		스마트양식	D14010	뉴로모픽 기술	F26016	
		인공지능	F27002	상황인지컴퓨팅	F27003	
		동작인식 및 분석	F27005	대화형 플랫폼	F27012	
		스마트물류시스템	F27015	슈퍼컴퓨팅	G36004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C10008	수소에너지(생산·운송· 저장시설 포함)	C10012	
		연료전지	C11002	무탄소가스발전 (수소, 암모니아)	C11006	
		에너지가스변환	C12004	액화기술	C13005	
		고온환원처리시스템	C13022	섹터커플링	C13023	
	BIG 3 (계속)	미래차	전기차/하이브리드	A04002	스마트카	A04004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A04005	수소전기자동차	A04009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A04010		

테 마	분 야	주 요 품 목				
BIG 3	바이오헬스	3D바이오프린팅	E17001	재생의료	E17003	
		바이오의약품생산시스템	E17005	바이오/인공장기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포함)	E17006	
		의료용 임플란트	E17008	개인맞춤형화장품	E18001	
		분자농업	E18002	미용식품 (뉴트리코스메틱스)	E18003	
		고부가가치식품	E18005	바이오시밀러	E19001	
		면역치료	E19004	장내미생물치료	E19006	
		경피약물전달	E19007	치료용항체	E19010	
		단백질치료법	E19012	개량신약	E19013	
		혁신신약	E19014	핵산 기반 백신 및 치료제	E19015	
		암검진	E20001	동반진단	E20002	
		액체생체검사	E20003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분자진단)	E20004	
		유전자 진단예측	E20010	초고속유전자염기서열분석	E21002	
		유전자 활용치료	E21006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E22004	
		인공지능 진단	E22006	기능성 스텐트	E23001	
		신경자극조절술	E23003	스마트알약	E23005	
		첨단의료기기	E23007	고령친화 의료기기	E23008	
		영상가이드수술	E25001	수술용레이저	E25002	
		수술용로봇	E25003			
	시스템반도체	3D집적회로	G32001	전력반도체소자	G32003	
		시스템반도체	G32004	AI칩	G32005	
		VCSE레이저	G32006	극자외선리소그래피	G32008	
		차세대메모리	G32009	반도체장비	G32010	
		자외선발광다이오드 (UVLED)램프	G32011			
	5대 유망신산업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F29009	차세대 데이터저장	G36001
		블록체인	블록체인	F29001		
		지능형로봇	협업로봇(코봇)	A02003	지능형 서비스로봇	A02006
			엑소스켈레톤	A02008	인간교감 소셜로봇	G33011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E24001	맞춤형웰니스케어 (모바일헬스)	E24002
글로벌의료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I45007			
메타버스		확장현실	F28001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F28006	
		메타버스	I45011			

별표 2

창업여부 기준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보증금지기업**

-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이하, ‘채무면탈기업’이라 함)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①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나. ①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①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 **보증제한대상기업**

- ① 휴업 중인 기업
- ②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③ 금융회사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⑤ 보증금지기업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보증금지기업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 ⑥ 신보(문화완성보증, 녹색보증 포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⑦ 신보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및 구매자인 기업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⑥, ⑦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나. ⑥, ⑦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⑥, ⑦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 ⑨ ⑥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⑧의 가~다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 ⑩ 허위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⑪ 신보(문화완성보증, 녹색보증 포함), 기보, 보증재단 및 SOC기금의 보증부실기업 (보증부실처리 유보기업 포함)

별표 4

보증제한·유의 업종

■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구 분	세부업종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예 시
도박 및 게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C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G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G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N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11, J58212, J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슬롯머신, 룰렛, 주사위, 경마, 릴, 메달게임 등을 카지노 및 성인용 게임장 등에 공급 하는 도박, 오락 기구 및 S/W 관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R91113) 	경마장, 경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게임장 운영업(R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R91249) 	경주권 발행소
향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유흥주점업(I56211) 	룸싸롱, 접객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도 유흥주점업(I56212) 	나이트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도장 운영업(R91291) 	댄스홀, 콜라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지업(S96122) 중 안마시술소 	
부동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1) 	아파트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L68121) 	아파트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자자문업(L68222) 중 부동산 컨설팅업 	기획 부동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J59142) 	비디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발행 및 판매업(R91241) 중 복권 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S96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휴게텔, 전화방

■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구분	세부업종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예시
담배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G46102) 중 담배 중개업	
	· 생맥주 전문점(I56213)	
	· 기타 주점업(I56219)	
	· 담배 도매업(G46333)	
	· 담배 소매업(G47222)	
사치	·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G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G47830) 중 귀금속 소매업	금은방
	· 금속광물 도매업(G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금괴 도매상
	·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G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G47841)	화랑
	· 골프장 운영업(R91121)	컨트리클럽
부동산	· 기타 부동산 임대업(L68119)	토지 임대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L68122)	상가 분양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L68129)	농지 개발
	· 부동산 관리업(L6821)	관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L68221)	공인중개사
기타	· 여관업(I55102)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특구내 숙박업, 관광진흥개발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신용보증부장이 인정하는 국제행사 개최지역 숙박시설로 지정된 기업은 제외]	
	· 택시 운송업(H49231) 중 개인택시 운송업	
	· 금융 및 보험업(K)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N75330)	홍신소